

경상남도 양산시 물금읍 코오롱하늘채 (기관추천 특별공급 관련 안내문)

▶ 공급개요 및 일정

○위치 : 경상남도 양산시 물금읍 가촌리 646번지 일원

○공급규모 : 아파트 852세대 중 일반분양 139세대(특별공급 48세대 포함 / 조합원 713세대 제외) 특별공급 48세대[일반(기관추천) 특별공급 11세대, 다자녀 특별공급 11세대, 신혼부부 특별공급 24세대,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2세대 포함] 및 부대복리시설

▶ 일정 계획(예정)

구 분	일 자	참 고 사 항
입주자 모집공고	2019.10.31.(목)예정	변동될 수 있음
입주지원센터 개관	2019.11.01(금)10:00부터	
신청일자	2019.11.05.(화) 08:00~17:30까지	APT2you 홈페이지로 접수하며,(다만,인터넷 사용이 곤란한 청약자는 입주지원센터에서 신청가능 10:00~14:00까지)
당첨자 발표	2019.11.13.(수)	APT2you 홈페이지 게재

※ 위 일정은 업무 추진 중에 다소 변동될 수 있으니 반드시 입주자 모집공고문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 특별공급 배정내역 : 48(28)세대

구 분		84A	70B	59C	59D	계	
일반(기관추천)특별공급 (10%)	국가유공자(보훈처)	1(1)	1(1)	1(1)	3(2)	6(5)	
	장애인	0(0)	1(1)	1(1)	3(1)	5(3)	
다자녀 특별공급(10%)		1(1)	2(1)	2(1)	6(3)	11(6)	
신혼부부 특별공급 (20%)	소득기준	우선공급 (75%)	2(1)	3(2)	4(2)	10(4)	19(9)
		일반공급 (25%)	0(0)	1(1)	1(1)	3(2)	5(4)
노부모 특별공급 (3%)		0(0)	0(0)	0(0)	2(1)	2(1)	
합계		4(3)	8(6)	9(6)	27(13)	48(28)	

※ 기관추천 접수세대가 미달일 경우, 타 유형 특공세대로 전환되며 잔여세대 배정 후 무작위 추첨진행

※ () : 예비대상자

▶ 특별공급 자격사항

- 입주자모집 공고(2019.10.31.목 (예정))일 현재 만19세 이상 무주택세대구성원

본 아파트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2019.10.31.) 현재 양산시에 거주하거나 경상남도, 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에 거주(주민등록표등본 기준)하는 만 19세 이상인 자 또는 세대주인 미성년자(자녀양육, 형제자매부양)[국내에서 거주하는 재외동포(재외국민, 외국국적 동포) 및 외국인 포함]도 청약이 가능합니다. 단, 동일 청약 신청자 중 같은 순위 내에 경쟁이 있을 경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해당 주택건설지역(양산시)에 1년(2018.10.31.) 이전부터 계속거주한 신청자가 1년 미만 양산시 및 경상남도, 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 거주 신청자보다 우선하며, 1년 미만 양산시 및 경상남도, 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 거주 신청자는 입주자 선정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특별공급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6조, 제40조, 제41조, 제46조에 따라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노부모부양자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주에 한정) 1회에 한하여

1세대 1주택의 기준으로 공급이 가능하고 당첨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향후 특별공급에 신청할 수 없음.

구분	내용																				
1회 한정/자격요건/자격제한	<ul style="list-style-type: none"> 특별공급 주택을 분양받으려는 자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5조에 따라 한 차례에 한정하여 1세대 1주택의 기준으로 공급이 가능하고 당첨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향후 특별공급에 신청할 수 없으며, 중복 신청할 경우 전부 무효 처리됨(「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6조 제1호 및 제8의2에 해당하는 경우는 특별공급 횟수 제한 제외)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요건, 청약자격요건 및 해당 특별공급별 신청자격을 갖추어야 함 																				
무주택요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다음 특별공급 유형별 무주택세대구성원 또는 무주택세대주 요건을 갖추어야 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세대 내 무주택세대구성원(노부모부양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주 한정) 중 1인만 신청가능하며, 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세대의 구성원(부부 포함)이 각각 신청하여 중복 당첨될 경우에는 모두 부적격 당첨으로 당첨이 취소됨. [계약체결 불가, 부적격당첨자로 관리되며 당첨일부터 '수도권 및 투기억압지역' 1년, 수도권외 6개월, 위촉지역 3개월(공급신청하려는 지역 기준) 동안 다른 분양주택(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을 포함)의 당첨 제한] - 기관추천 / 다자녀가구 / 신혼부부 특별공급 : 무주택세대구성원 요건 - 노부모부양자 특별공급 : 무주택세대주 요건 ※ 무주택세대구성원이란? 다음 각 목의 사람(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세대의 구성원(「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제2호의3 및 제4호)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 주택공급신청자 나.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 다.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이면서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 라.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이면서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 마.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이면서 주택공급신청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 																				
청약자격요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다음 특별공급 유형별 신청자의 청약통장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관추천 특별공급 (국가유공자, 장애인, 월거민 및 도시재생 부지제공자는 제외) / 신혼부부 특별공급 /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신청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청약예금 : 해당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청약예금 지역별, 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자 ② 청약부금 : 청약부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납부한 월납입인정금액이 85㎡이하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 예치금액 이상인 자 ③ 주택청약종합저축 :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해당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 지역별, 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자 -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신청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청약예금 : 해당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청약예금 지역별, 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1순위자 ② 청약부금 : 청약부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납부한 월납입인정금액이 85㎡이하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 예치금액 이상인 1순위자 ③ 주택청약종합저축 :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해당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 지역별, 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자 ※ 각 청약통장으로 신청 가능한 전용면적 이하에 해당되는 주택형에만 청약 가능함. <p style="text-align: center;">[청약예금의 예치금액]</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구분</th> <th>양산시/경상남도</th> <th>울산광역시</th> <th>부산광역시</th> </tr> </thead> <tbody> <tr> <td>전용면적 85㎡ 이하</td> <td>200만원</td> <td>250만원</td> <td>300만원</td> </tr> <tr> <td>전용면적 102㎡ 이하</td> <td>300만원</td> <td>400만원</td> <td>600만원</td> </tr> <tr> <td>전용면적 135㎡ 이하</td> <td>400만원</td> <td>700만원</td> <td>1,000만원</td> </tr> <tr> <td>모든면적</td> <td>500만원</td> <td>1,000만원</td> <td>1,500만원</td> </tr> </tbody> </table>	구분	양산시/경상남도	울산광역시	부산광역시	전용면적 85㎡ 이하	200만원	250만원	300만원	전용면적 102㎡ 이하	300만원	400만원	600만원	전용면적 135㎡ 이하	400만원	700만원	1,000만원	모든면적	500만원	1,000만원	1,500만원
구분	양산시/경상남도	울산광역시	부산광역시																		
전용면적 85㎡ 이하	200만원	250만원	300만원																		
전용면적 102㎡ 이하	300만원	400만원	600만원																		
전용면적 135㎡ 이하	400만원	700만원	1,000만원																		
모든면적	500만원	1,000만원	1,500만원																		

▶ **당첨자 선정(공고) 유의사항**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 36조에 따라 민영주택의 기관추천 특별공급은 관계기관의 장이 정하는 우선순위에 따라 당첨자가 선정됩니다.
- 일반(기관추천) 특별공급 예비대상자는 해당기관에서 선정하여 사업주체에 통보한 자만 신청 가능하며, 해당 기관에서 특별공급 예비대상자로 선정되었다 하더라도 반드시 해당 신청일에 인터넷 청약 신청의 방법으로 신청하여야 하며, 특별공급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이 있는 경우 다른 특별공급 신청자 중 선정되지 않은 자를 포함하여 무작위 추첨으로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를 선정하므로,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
- 개별 통지는 하지 않으며 당첨자 명단에 대한 전화문의는 응답하지 않음.

▶ 특별공급 유의사항

- 기관추천 대상자도 특별공급 접수 일에 신청 접수하여야 당첨자자격이 주어짐.
 - 1세대내 무주택세대구성원 중 1인만 신청가능하며, 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세대의 구성원(세대분리된 배우자 포함)이 각각 신청, 중복 청약하여 당첨될 경우에는 모두 부적격 당첨으로 당첨이 취소됨.(당첨자 명단관리, 계약체결 불가, 입주자 저축 효력 상실 및 재사용 불가)
 - 신청접수는 APT2you 홈페이지로 접수하며(다만, 인터넷 사용이 곤란한 청약자는 입주지원센터에서 신청가능 10:00~14:00까지) 마감시간(17:30)이후에는 추가로 접수하지 않으니 유의하시기 바람.
 - 특별공급 신청자는 일반공급 신청이 가능하나, 특별공급 당첨자로 선정되면 해당 특별공급 주택만 당첨으로 인정하며, 일반공급 주택에 대한 청약은 무효로 처리함.
 - 본인이 특별공급간 중복신청 할 수 없으며 중복 청약 시 모두 무효처리함.
 - 본 주택에 신청하여 당첨될 경우 당첨자로 전산 관리됨.
 - 특별공급은 예비입주자를 선정하며, 특별공급 신청 미달 시 잔여물량은 타 유형 특별공급으로 배정함.
 - 청약 신청 시 신청자의 착오로 인한 잘못된 신청에 대해서는 수정 접수가 불가하며, 이에 대한 책임은 청약신청자에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람.
 - 국토교통부 전산검색결과에 따른 세대주 및 세대원의 주택소유 여부에 따라 부적격 통보를 받을 수 있음.
 -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르거나 기재내용을 검색 또는 확인결과 평점 요소자격이 다르거나 무주택기간이 상이할 경우, 또는 유주택자로 판명될 경우에는 분양계약 체결 이후라도 당첨 취소 및 계약해제는 물론 관련법령에 의거 처벌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람, 계약 해제 시 계약금 납부금액에 대한 별도의 이자는 지급되지 않음.
 - 과거 특별공급에 당첨된 사실이 있는 자 및 그 세대에 속하는 자는 신청할 수 없음.
 - 특별공급 대상자로서 동·호수를 배정받고 공급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당첨자로 보며 (1회 특별공급 간주), 해당 구비서류 미비 시 계약체결 후라도 계약이 해제 될 수 있음.
 - 기관추천 특별공급대상자가 신청일(2019.11.05.(화) 08:00~17:30까지)에 APT2you 홈페이지로 접수하지 않을 경우(다만, 인터넷 사용이 곤란한 청약자는 입주지원센터에서 신청가능 10:00~14:00까지) 잔여물량은 타 유형 특별공급 세대로 전환됩니다.
 - 신청한 주택형의 동·호수배정은 특별공급, 일반공급 구분 없이 전산관리지정기관(금융결제원) 컴퓨터 프로그램에 의해 무작위로 추첨합니다.
(미신청, 미계약 동·호 발생시에도 동·호 변경 불가)
 - 기관추천 특별공급은 타 특별공급(다자녀, 신혼부부, 노부모부양)과 중복신청이 불가하며, 중복 당첨된 경우 2건 모두 계약체결 불가, 당첨자명단관리, 통장효력 상실 및 청약통장 재사용 불가합니다.
 - 재당첨제한기간, 공급대상 주택관련 세부사항 및 유의사항은
2019.10.31.(목)(예정) 공고예정인 입주자모집공고문을 확인하시어 공고문 미확인으로 인한 불이익이 발생치 않도록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청형별 세부사항 등은 입주지원센터, 홍보물을 통하여 반드시 확인 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주자모집공고일 2019.10.31.(목)(예정)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이 아닌 자는 접수 불가하며 당첨자 명단 관리 등의 불이익을 받게 되오니 적격대상자 명단을 통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 ▶ 신청 시 구비서류(인터넷 사용이 곤란하여 입주지원센터에서 신청하는 청약자의 경우)
- 아래의 제 증명서류는 입주자모집공고일 2019.10.31.(목)(예정)이후 발급분에 한하며, 아래 필요 신청 서류 중 1건이라도 미비 시에는 접수가 불가함

- 본인 및 배우자 이외는 모두 제3자 대리 신청으로 간주됨
- 주민등록표등본은 주민등록번호(세대원포함), 세대구성사유 및 일자, 세대구성원의 관계 포함하여 발급

○ 특별공급 신청시

해 당 서 류	제출대상 및 유의사항
특별공급신청서 등	신청일에 신청장소(입주지원센터)에 비치
주민등록표등본	본인의 주민등록표등본 및 배우자가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배우자의 주민등록표등본 1통 추가제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등본에 배우자가 등재되어 있지 않은 세대주 및 배우자가 없는 세대주의 경우
청약통장 순위(가입)확인서	청약통장 가입은행으로부터 순위(가입)내역 발급 또는 주택청약 서비스 APT2you 홈페이지에서 청약통장 순위(가입)확인서 발급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본인 신청시는 본인의 신분증 제출, 배우자 신청시는 본인 및 배우자의 신분증 제출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특별공급 신청용 1통
인감도장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인감증명서 날인

○ 제3자 대리인 신청시

구 비 서 류	비 고
위임장	청약자의 인감도장이 날인된 위임장(입주지원센터 비치)
신청자 인감증명서	신청자 인감증명서 2통(특별공급 신청 위임용 1통포함)
신청자 인감도장	인감증명서 날인
대리신청자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APT2you 홈페이지를 통해 청약하신 경우, 위의 서류는 계약체결 이전에 제출을 하시기 바랍니다.

경상남도 양산시 물금읍 코오롱하늘채 (기관추천 특별공급 관련 안내문)

■ 추천기관 : 경상남도 양산시 물금읍 가촌리 646번지 일원

■ 특별공급 대상 : 기관추천 특별공급

○ (※기관 우선순위 기준으로 추천해 주십시오)

추천기관	주택형	우선순위	우선순번	성명	주민번호	주소	연락처
		1순위	1				
			2				
	예비	1					
		2					

※ 추천기관은 예비자를 포함하여 대상자를 추천해주시기 바랍니다.

▶ 유의사항

- 기관추천 특별공급 대상자가 신청일(2019.11.05.(화)08:00~17:30까지)에 APT2you 홈페이지로 접수하지 않을 경우(다만, 인터넷 사용이 곤란한 청약자는 입주지원센터에서 신청가능 10:00~14:00까지), 잔여물량이 타 유형 특별공급세대로 전환됨을 알립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규칙 제36조에 따라 민영주택의 기관추천 특별공급은 관계기관의 장이 정하는 우선순위에 따라 당첨자가 선정됩니다.